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한병도ㆍ이성윤ㆍ박희승

임오경 • 박정현 • 강경숙

이기헌 • 강선우 • 김병기

진선미 • 박지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, 한 번에 둘 이상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을 넘어선 국가 소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,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에서 12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)로 확대하고, 유급 출산전후휴가(유산·사산 휴가 포함) 기간을 현행 6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에서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로 연장함으로써. 출

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,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56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전단 중 "90일"을 "120일"로, "120일"을 "180일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45일"을 "60일"로, "60일"을 "90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45일"을 "60일"로, "60일"을 "90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60일"을 "90일"로, "75일"을 "120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사용자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
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	
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<u>90일</u>	120일
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	
한 경우에는 <u>120일</u> )의 출산전	<u>180일</u>
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	
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	
<u>45일</u> 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	<u>60일</u>
임신한 경우에는 <u>60일</u> ) 이상이	<u>90일</u>
되어야 한다.	
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	2
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	
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	
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	
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	
한다.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	
기간은 연속하여 <u>45일</u> (한 번에	<u>60일</u>
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	
는 <u>60일</u> ) 이상이 되어야 한다.	<u>90일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4
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<u>60일</u>	<u>90일</u>

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
한 경우에는 <u>75일</u> )은 유급으로
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
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
률」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
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
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
책임을 면한다.

⑤ ~ ⑩ (생 략)

<u>120일</u>
⑤ ~ ⑩ (현행과 같음)